대기환경보전법 해설

金 晩 鎬
〈환경처 · 대기관리과장〉

「목 차」

1. 서언
2. 주요 내용
   1)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대상확대
   2) 총량규제 대상구역의 확대
   3) 방지시설 설치의 강화
   4)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5) 무허가 배출시설등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확보신설
   6) 배출시설 관리인의 직무강화
   7) 생활악취원의 규제
   8) 제작자동차 인증제도의 신설
   9)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개선명령
   10) 대기방지 시설업
   11) 공해 단속요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3. 결언

1. 서언

지난 7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이 새로이 제정(制定)되었다.

그동안 환경처에서는 대도시와 공업단지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의 확대 공급, 저유황 벙커-C유 사용 의무화, 업소의 대기오염물질배출 감시·감독,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대기오염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 원인의 첫째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탄과 유류가 아황산가스 발생량의 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換言)하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탄과 벙커-C유를 경유나 LNG로 전환하면 대기오염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나 연료 변경으로 인한 연료비, 시설비등의 추가 부담금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다. 분진 발생은 제조업(시멘트, 철강, 연탄등)에서 일정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것보다 분진 야적장 및 공사장, 도로, 자동차 매연등 시설관리가 어려운 비산분진 발생원 때문에 문제이다.

셋째는 대기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이다. 주로 공업단지나 공장 밀집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공정(工程)중 안전사고등으로 다량의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기의 질(質)을 개선하는 데에는 환경외적인 요인들이 많아 해결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염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청정연료인 LNG 공급을 년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② 자동차의 무연 휘발유 사용과 중형자동차에 까지 휘발유나 LPG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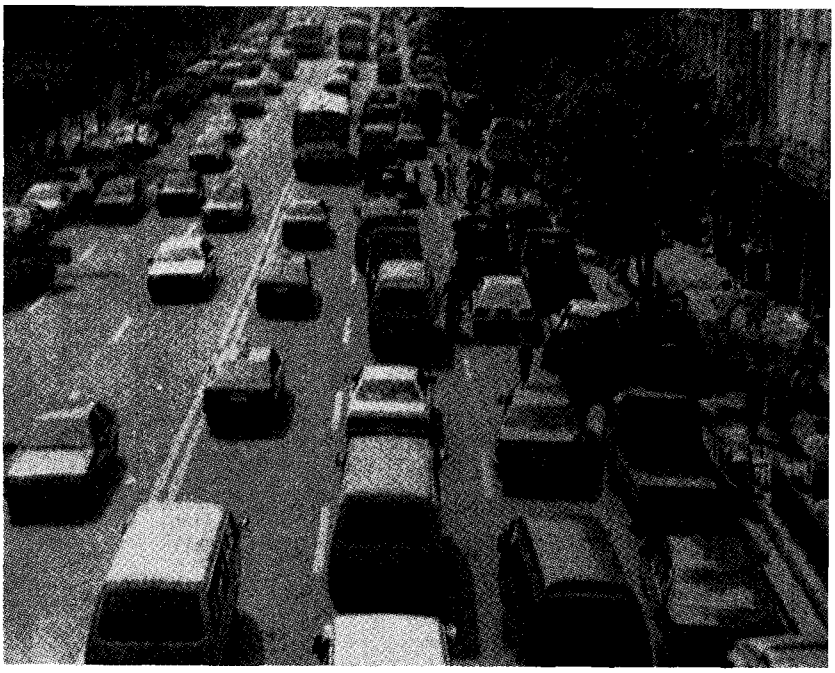

하는 사업과 ③ 대형 공장의 굴뚝에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집중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은 그동안 환경보전법 단일 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대기, 수질, 소음·진동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키 위하여 분법(分法), 개별법화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1)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 확대(제8조)

현행법에서는 환경의 오염 또는 생태계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때에만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정된 법에서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계없이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일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의 대기오염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울산·온산공단('86.3월 지정)으로서 앞으로 환경기준 유지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총량규제 대상구역의 확대(제9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는 대기오염이 심화된 지역내에 개개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 일지라도 특정지역 전체로 보아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총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한해서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당해 구역의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제정법에서는 총량 규제의 대상구역을 확대하여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사업장 또는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대도시 지역이나 공장지역등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방지시설 설치의 강화(제11조)

현행법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는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배출시설로 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처리가 가능할시는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유해물질(불소, 염소등)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설사 방지시설 설치없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한다 하더라도 환경상의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例外)사항을 새로히 규정하고 있다.

4)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대한 벌칙강화(제15조 제2항, 제4항 및 제5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시설및 방지시

설의 운영상황을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도록 하고, 기기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자진신고)하도록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5) 무허가 배출시설등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확보신설(제21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무허가 시설(일부 또는 전체시설)을 적발 하였을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의 업소는 허가를 득 할때까지 조업정지명령하고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는 폐쇄명령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할 시 동일 명령만 반복하며 고발조치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배출시설 관리인의 직무강화(제24조 제2항, 제4항)

현행법에서는 배출시설 관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의 여부를 사업자로 하여금 감독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정법에서는 이 외에도 배출시설 관리인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등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이

"제정법에서는 환경관리인이 배출·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등에 의해 그 직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7) 생활악취원의 규제(제30조)

악취물질은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허가 대상 규모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생활주변에 상당히 있으나 이를 규제하지 못하였다. 악취는 감각공해로서 여름철에 심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배출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악취에 까지 규제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 대상 악취 발생원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소 규모의 축산시설, 식품가공시설, 도축장등 민원 발생이 많은 시설이 될 것이다.

8) 제작자동차 인증제도의 신설(제32조)

현행법에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에게 그가 제작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등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제정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그가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에도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된다는 인증을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받은 후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에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차 제작단계에서 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운행차의 수시점검과 개선명령(제37조 및 제38조)

환경처장관은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기오염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10) 대기방지시설업(제44조)

현행 방지시설업은 법 제4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방지시설업의 종류 및 시설, 장비등에 의하여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업, ② 대기오염방지시설업, ③ 소음·진동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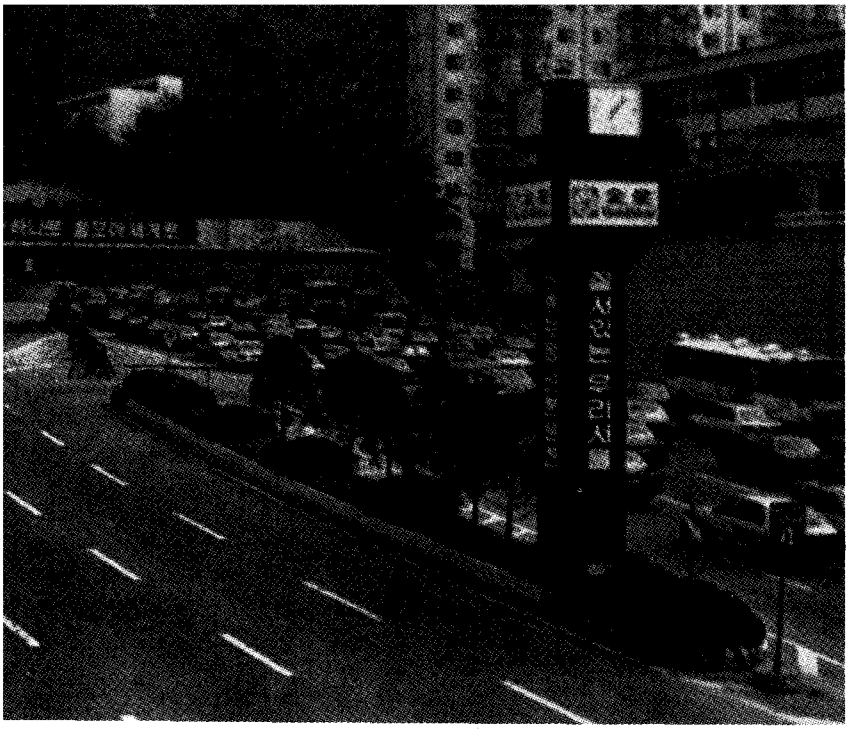

지시설업, ④수질오염방지시설업으로 구분, 지정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행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으로 분법(分法), 제정되었고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방지시설업도 지정이 됨으로 현행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일명 종합 방지시설업)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방지시설업(대기, 수질,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정법에 의하여 대기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은 소음·진동규제법, 수질방지시설업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등록을 받으면 된다.

11) 공해 단속요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그동안 환경오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처 또는 시·도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주요 업무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출입하면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이였는데 사업장의 출입에서 부터 시설의 점검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점검 거부, 회피, 은폐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하여 효과적인 점검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번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으로서 환경처 및 시·도의 환경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환경관계법과 폐기물 관리법의 위반범죄에 대하여 사법권을 부여(제5조 제24항)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사법경찰권을 가지게 된 환경처 및 시·도 환경관계 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영장의 집행과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 구금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현행 환경보전법을 단지 분법한 것에 끝이지 아니하고 대폭 강화하면서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본 제정된 법안은 곧 공포될 것이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6개월 이내에 제정되어 동시에 시행될 것이다.

3. 결언

환경처는 지금까지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유황유 확대 공급, 가정의 난방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 공급, 저공해 자동차 생산 및 무연휘발유 사용등 여러가지 시책을 펴고 있으며 대형 공사장, 연탄공장, 골재 야적장등에 비산분진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먼지 공해를 저감시켜 왔다. 또한 공업단지의 공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서는 울산·온산 공단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 지역내에서는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저유황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돌자동측정기를 부착, 배출상태를 상시 감독하여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부족한 사업장에게는 각종 방지기금을 마련하여 융자해 주고 있고, 정기적인 배출시설 관리인의 교육, 기술지도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에 투자기피 및 정상가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은 사업주나 배출시설 관리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이제는 더이상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왔다.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